

사업장 대상 재활용 및 유기물 재활용 가이드

이 가이드를 받는 경우, 캘리포니아의 재활용법 의무 대상입니다.

의무적인 재활용 및 유기물 재활용 (MCR, MORE, 및 SB 1383)

-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에서는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라벨을 부착하고, 재활용하며,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. *
- 기업은 직원에게 적절한 재활용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.

AB 827: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 교육 및 참여

MCR 및 MORE 적용 사업장은 고객이 구매하고 소비한 제품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재활용품 및 유기물 수거통을 사업장 앞에 비치해야 합니다. 이러한 수거통은 쓰레기통 옆에 비치되어야 합니다.

Add jurisdiction contact information here

AB 827 요구사항

- AB 827 법에 따라 수거통은 눈에 잘 띄고,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.
-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고객에게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수거통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, 고객이 사용한 재활용품과 유기물을 직원들이 분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 옆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수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.
- 자세한 정보나 표지에 관한 문의는 시/카운티 또는 수거업자에게 연락하시거나 (916) 341-6199번으로 CalRecycle에 전화하세요.

이 요구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및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.

<https://www.calrecycle.ca.gov/Recycle/>

맞춤형 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. [https://www.calrecycle.ca.gov/Recycle/ Commercial/Organics/PRTToolkit/](https://www.calrecycle.ca.gov/Recycle/Commercial/Organics/PRTToolkit/)

